

<b>의안 번호</b> 2358	<b>【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】</b> 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11. 11.(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11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18.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바람직한 광고문화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·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변경사유
  - 행정안전부 「2025년 간판개선사업」 공모대상지(구역전시장) 선정에 따른 사업비 300백만원 확정(24.10월)·배분예정(예치금 300,000천원 증액)
- 세부내역
  - 수입내역

세입과목(천원)				
장	관	항	목	수입액
				<b>1,325,531</b>
세외수입 (200)	경상적 세외수입 (210)	수수료수입	기타수수료(201-05)	35,000
		이자수입	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	32,442
	<b>임시적 세외수입(220)</b>	<b>기타수입</b>	<b>그 외수입(224-07)</b>	<b>300,000</b>
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(230)	과태료	기타과태료(234-02)	30,000
보조금(500)	국고보조금등(510)	국고보조금등	국고보조금등(511-01)	27,000
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(700)	보전수입등(710)	예치금회수	예치금회수(714-01)	901,089

○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(천원)					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예산액
					1,325,531
재무활동	보전지출 (옥외광고발 전기금)	예치금	예치금(602)	일반예치금(01)	1,218,060
		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집행잔액 반납	반환금기타(802)	국고보조금반환금(01)	1,400
		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자 반납			32
		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집행잔액 반납			4,000
		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이자 반납			39
도시 디자인 구현	옥외광고물 관리(옥외광 고발전기금)	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	일반운영비(201)	공공운영비(02)	30,000
			재료비(206)	재료비(01)	25,000
			시설비및부대비(401)	시설비(01)	20,000
		이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사업	민간자본이전(402)	민간자본사업보조(01)	20,000
		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	재료비(206)	재료비(01)	7,000

○ 지출계획(안)

(단위:천원)

부서·정책·단위·세부·과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지역및도시	1,325,531	1,025,531	300,000
재무활동	1,223,531	923,531	300,000
보전지출(옥외광고발전기금)	1,223,531	923,531	300,000
보전지출	1,223,531	923,531	300,000
602 예치금	1,218,060	918,060	300,000
01 일반예치금			
○예치금 1,218,060,000원-기정 918,060,000원 = 300,000	1,218,060	918,060	300,000
지출합계	1,325,531	1,025,531	300,000

#### **4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

#### **5. 검토의견 : 없음**

# 큰 거 법 규

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